

의안번호	2200762
의 퇴 인	이인선 의원
회 답 일	2024. 7. 5.
추계번호	24A118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됨(제1항)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22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는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6조(국가기간 전력 망확충위원회 설치)	○ 미대상: 유사사례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¹⁾ 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회의참석수당 등 ²⁾ 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3	안 제22조(국가 등의 지 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설치 및 개발사업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22조는 국가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22조제1항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으며,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원/연 정도 소요됨

- ☐ 제정안은 재정소요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